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개정이유

○ 2003. 7. 16.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된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 하려는 것임.

Ⅱ.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신설
(안 제3조제2항제8호)

Ⅲ. 검토의견

○ 국가와 사회공익을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공고히 한다는 목표 아래 2003. 7. 16.「호국보훈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합리적인 보훈보상을 실현하고, 의료·복지시책을 강화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훈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종전 각 개별법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5. 5. 31.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법률 제7572호)된 바 있습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를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보훈가족에 대한 의료·복지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보훈대상자는 서울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환자가 많아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고, 또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역보건소에서 진료를 희망하고 있어 그간 서울북부보훈지청 등에서 여러 차례 감면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25개 구 중 12개 구(중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가 이에 동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진료비 등을 감면하더라도 연간 세입 손실액이 2005년 기준으로 200만원 내외(총 진료비 3억 6,268만원의 약 0.5% 수준)로 큰 부담도 아니므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이번 조례개정시 감면 혜택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써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 이에 해당되겠으며, 감면의 내용은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본인 부담금과 각종 수수료 등 입니다.

Ⅳ.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第14條 (手數料등) ①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 者로부터 手數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診療費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